

AI 시대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한 새 청사진 마련

- 한성숙 국무총리,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주재
‘AI 시대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장,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소비자 주권’
달성을 위한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7~'29)」 확정 -

<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

-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8.(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7~'29)」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하였다.

* (의결안건) ①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7~'29)
②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③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보고안건) ④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⑤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제로 8개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어, 소비자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소비자기본법 제23조)
-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최근 AI와 디지털 기술이 크게 발전함과 동시에, 소비자 주권 의식도 높아져 소비자가 직면하는 소비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 “AI 시대 소비자 스스로 능동적 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주권정부의 새로운 소비자 정책 청사진을 마련했다”라고 밝히고, “범부처가 힘을 모아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안전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 1.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7~'29) >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향후 3년간 국민주권정부의 소비자정책 방향을 담은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7~'29)」을 의결하였다.

○ 특히, AI·디지털 전환 등 최근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AI 시대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장,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소비자 주권’이라는 비전 아래 ①국민 모두가 AI·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소비환경 구현, ②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소비 생태계 구축, ③신속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회복 실현 등 3대 목표를 마련하였다.

- (①모두를 위한 디지털 환경) AI 기반 시장감시시스템 구축,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중단권 등 소비자 데이터 자기결정권 강화, 사용자 친화적 키오스크 개발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소외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AI·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②안심할 수 있는 소비 생태계) 위해(리콜)제품의 실시간 유통 차단과 AI 기반 수입식품 감시 등 생활 밀착형 제품·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허위·과장 친환경 표시·광고 예방, 1회용기 매장의 다회용기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 (③신속·실질적 피해회복) 집단소송제도*의 확대 도입 지원, 법원의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 도입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소비자 권리보장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소비자(단독 또는 다수)가 대표 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 안전 2. 20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정부가 작년에 추진한 157개 과제의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하였다.

- 기관별로 설정한 과제(중앙 89개, 지방 68개)들이 대부분 차질 없이 수행된 것으로 평가되었고, 평가점수도 전년대비 상승*하였다.

* 중앙 : 80.8('24) → 81.3('25) / 광역 : 77.2('24) → 78.2('25)

- ▲농식품부의 국민 먹거리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한 농축산물 안전 및 원산지 관리 강화, ▲식약처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발굴 및 정보 공개, ▲대구광역시의 소비자참여형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인천·경기·경북의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별 안전 관리 강화 및 교육활동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금번 평가 결과를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에 통보하여 차년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높은 평가를 받은 과제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상할 계획이다.

< 안건 3.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법령, 고시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요소를 개선하는 내용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 첫째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요금·위치·이용가능 여부 등 핵심정보를 소비자가 보다 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통합·표준화하고 제공 방식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 둘째로, 영유아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유아용 수면제품의 폭신함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도 안전기준 및 실험방법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산업통상부)
- 셋째로,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핸디형 피부관리기의 안전기준과 규격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산업통상부)
- 넷째로, AI 생성물이 활용되는 온라인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AI로 생성된 정보인지 알 수 있도록 포털·플랫폼 사업자의 생성물 표시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권고하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다섯째로, 반려동물 완전사료의 영양소 표시·광고를 사업자가 직접 입증하도록 실증하는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입증자료 요청권자 및 제출기한 규정을 보완하도록 권고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 안건 4.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급변하는 소비환경과 새로운 소비자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방식을 개편하기로 하였다.
 - (상시화) 기존 연 2회 정례 개최 방식에서 벗어나, 대규모 소비자 피해나 새로운 소비자 현안 등이 발생할 경우 관계 부처와 전문가를 신속히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
 -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전문위원회·실무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시급한 사안은 서면의결을 통해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높인다.
 - * (전문위원회)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기구로, 관계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
 - (실무위원회)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을 연구·검토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현안 대응 강화)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비자기본법상 부당행위 지정·고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정부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는 등 현장 대응력과 정책 실효성을 강화한다.
 -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고시(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
- 이를 통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범정부 소비자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소비자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안건 5.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 확보와 신속한 권익 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도입할 것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제안하였다.

- (집단적 피해구제 강화) 다수·소액 피해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소비자 분야 전반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 입증을 보다 수월히 하기 위해 법원이 사업자가 보유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직접 명령하는 제도 도입 등을 건의하였다.
- (소비자안전 통합관리 체계 구축) 부처별로 분산된 안전·리콜 정보를 일원화하는 ‘범정부 안전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위해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판매중지 및 통지의무 법제화를 건의하였다.
- (신산업 분야 소비자보호 확립) 구독서비스의 유료전환 전 명시적 사전 동의 및 ‘원클릭 해지 원칙’을 의무화하고, 플랫폼의 노출기준 공개 및 국민 안전과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AI에 대한 설명청구권·이의 제기 절차 도입을 제안하였다.
- (AI 시대 데이터 주권 강화) ‘목적별 세분화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손쉬운 동의 철회’ 체계와 ‘데이터 이동권’ 인프라를 정비하고, 정보유출 분쟁 시 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 (포용적 소비환경 조성) 디지털 취약 계층의 소외 방지를 위한 공공·필수 서비스의 非디지털(대면·유선) 창구 유지 및 키오스크 등의 고령·장애 친화적 설계 준수를 의무화하고, 신종 디지털 범죄에 대한 취약소비자 전담 신속 피해구제 체계 마련을 건의하였다.

- <붙임> 1.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으로 달라지는 국민소비생활
 2. 상정안건별 주요 내용
 3.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및 위원 명단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윤영주 (044-200-2190)
		담당자	서기관	강대준 (044-200-2191)
담당 부서 <공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권순국 (044-200-4405)
		담당자	서기관	정용선 (044-200-4406)

제7차 기본계획으로 달라지는 국민소비생활

1 딥페이크 부당광고, 조작후기, AI가 먼저 찾아내 퇴출합니다.

- 시장감시로 딥페이크 거짓광고, 다크패턴, 플로팅 광고 상시 차단
- 중고차 허위매물, 결혼·장례 등 불투명한 바가지 관행 집중 개선 및 해외 플랫폼 책임 강화



2 내 소비·금융 데이터, 내가 직접 통제합니다.

-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로 내 거래·이용내역 전송요구권 등 데이터 자기결정권 보장
- 동의 강요, 탈퇴 방해, 깜빡이 개인정보 수집 등 관행적 프라이버시 침해 근절



3 해외직구·신기술 위험물품, 통관·유통 단계에서 미리 걸러냅니다.

- AI 자동판별 시스템으로 수입식품 반입차단, 원료 직구 위해 제품 사전 감시
- 위해·리콜 제품 정보 실시간 전파·자동 판매 차단



4 어르신도, 장애인도 무인 키오스크, 앱 결제가 쉬워집니다.

- 글자 크기, 음성안내, 표준화된 배려형 무인 단말기 'UI' 표준 보급·확산 (큰 글씨, 음성안내, 쉬운 화면 구성 등)
- 디지털 배움터를 통한 모바일 금융·생활앱 맞춤형 교육 강화



5 부품 없어 못고치던 가전제품, 이제 '수리할 권리'를 누립니다.

- '소비자 수리권' 법제화로 수리용 부품 수급 보장 및 오래 쓰는 순환경제 기반 마련
- 거짓 친환경(그린워싱) 감시 강화 및 다회용기·친환경 제품 포인트 지원 확대



6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집단소송'으로 누구나 바로 돌려받습니다.

-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일괄 배상·구제 실현
- 소비자 단체소송 허가제 폐지 및 증거확보제도 강화
- AI 기반 분쟁상담·조정 시스템으로 신속한 권리구제



제1호-의결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 ◇ 국민주권정부의 소비자는 자율적이고 합리적 선택(소비자주권 행사)을 통해 건전한 시장 혁신과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경제 주체
- ◇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소비자주권(8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범정부 중장기 소비자정책 청사진

* ①안전권, ②알 권리(정보제공), ③선택권, ④의견 반영권, ⑤피해 보상권, ⑥교육받을 권리, ⑦단체 조직·활동권, ⑧쾌적한 환경 향유권

1 지난 기본계획 평가 및 제7차 기본계획의 변화

□ 지난 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점

- (1~4차) 소비자 안전·거래공정화 등 기초 제도 정착 및 범정부 추진기반 확립
- (5·6차) 플랫폼·비대면 거래 확대에 따른 부당광고·위해제품 확산 등의 위협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체계 확립

☞ 디지털 경제 전환 준비, 취약계층 교육 등 '수동적·사후적 방어'에 집중

□ (제7차 기본계획) 수동적 소비자 보호 관점을 넘어,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스스로 능동적 주권을 실현하도록 패러다임 전환

구 분	제5·6차 기본계획	제7차 기본계획
정책 관점	사후 규제 및 위험 대응 (수동적 보호)	AI·디지털 활용 소비자주권 실현 (능동적 권익 증진)
시장 감시 권리·역량	법·제도 개선을 통한 사후 제재 취약계층 교육·역량 강화	AI를 활용한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데이터 주권 보장 및 AI 기회 동등 참여
피해 구제	개별적인 피해상담·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소송	AI기반 피해구제 및 집단소송을 통한 선제적·실질적 일상회복

2 제7차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

□ (비전) AI 시대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장,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소비자 주권

□ (목표) ①국민 모두가 AI·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소비환경, ②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③선제적·종국적 피해 회복을 3대 목표로 설정

1. AI·디지털 시대 모두를 위한 소비환경 조성

① 소비자 데이터 주권 보장 및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 마이데이터 전송 대상을 쉐분야로 단계적 확대(의료·통신 → 에너지·교육·문화여가 등)하고 전송요구권 등 데이터 자기결정권 강화 **개보위**
- 인센티브 등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 보호·보안 투자 유도 등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상시 점검 체계로 개인정보 보호정책 패러다임 전환 **개보위**
 - 서비스 가입·이용·탈퇴 쉐과정에 걸쳐 관행화된 동의 강요, 중요정보 숨김, 회원탈퇴 방해 등 프라이버시 침해행위를 집중 점검·개선

② AI·데이터 기반 소비자정보 제공 확대

- '참가격' 민생물가 정보 제공 품목을 확대하고, 결혼서비스 등 정보 비대칭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AI 기반 가격 이상징후 자동탐지·안내 체계 구축 **공정위**
- QR 스캔을 통해 원재료·영양 정보를 AI로 요약·비교하고 스마트 가전과 연동하는 국민식생활 통합정보 DB를 단계적으로 구축 **식약처**

③ AI·디지털 이용역량 및 금융 소비자교육 강화

- 디지털배움터 운영, 취약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바일 금융·키오스크 사용법을 보급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과기부, 금융위**
-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손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 화면구성, 음성안내 등을 표준화한 사용자 친화적 키오스크 표준 UI 개발·보급 **과기부**

④ 디지털 시장에서의 불공정 근절

- AI 기반 시장감시시스템 구축('27년~) **공정위** 및 'AI캡스*'의 쉐분야(식품·화장품·의료기기) 확대 **식약처**를 통해 온라인 부당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차단
 - * 키워드를 자동 검색·수집하여 위법 가능성 높은 게시물을 선별하는 AI 시스템
- '플로팅 광고*', AI 신기술 부당광고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조사와 연계하여 제재 실효성 제고 **방미통위, 공정위**
 - * 웹페이지나 앱 화면에서 콘텐츠 위에 떠다니며 화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광고

2. 일상생활 속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거래환경 구축

⑤ AI 기반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유통 차단

- AI 기반 자동판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의 반입차단 원료 포함 여부 감시의 실효성 강화 **식약처**
- 소비자24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등을 통해 위해 제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외 플랫폼과의 협약을 확대하여 위해제품 유입 신속 차단 **공정위**

⑥ 생활밀착형 제품·식품 안전관리 강화

- 전기·생활·어린이용품 등 생활 밀접분야의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위해(리콜)제품 정보를 전국 30만 개 유통매장에 실시간 전파하여 판매 차단 **산업부**
-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 **농식품부** 하고 부적합·위해 요인의 유입을 차단 **식약처** 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환경 조성

⑦ 친환경 소비 확산 및 그린워싱 대응 강화

- 플랫폼 내 녹색제품 전용관 개설 등 유통 판로 확대를 지원 **농식품부** 하고, 업체별 교육 및 자율시정 체계를 통한 허위·과장 친환경 표시(그린워싱) 예방 **기후부**
- 공유자전거 이용 시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등 국민 참여형 기후행동 캠페인을 확대하고, 1회용기 매장의 다회용기 전환 지원(대여·세척비) **기후부**
- 소비자 수리권(수리할 권리) 도입에 따른 부품 수급 절차를 개선하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등 순환경제 제품의 안전기준 정비 **국토부, 기후부, 산업부**

3.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소비자권리 보장체계 확립

⑧ 선제적·종국적 피해회복을 위한 기반 구축

- 대규모 복합 피해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법무부**
- 소비자단체소송 허가제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청구 및 자료제출 명령제를 신설하여 단체소송의 실효성과 피해예방 기능 강화 **공정위**

비전

AI 시대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장,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소비자 주권

목표

- ① 국민 모두가 AI·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소비 환경 구현
- ②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소비 생태계 구축
- ③ 신속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회복 실현

추진 전략

및

중점 과제

AI·디지털 시대
모두를 위한 소비환경
조성

- ▶ 신뢰할수 있는 디지털 거래질서 확립
- ▶ 내 정보 내가 통제하는 '소비자 데이터 주권' 보장
- ▶ AI·자율주행 등 신기술 분야 안전기준 선제적 정비
- ▶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디지털 소비환경 조성

일상생활 속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거래환경 구축

- ▶ 공정하고 책임 있는 거래 질서 확립
- ▶ 소비자안전 우려 분야 대응 강화
- ▶ 포용적 소비환경 및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 조성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소비자권리 보장체계
확립

- ▶ AI 기반 분쟁해결을 통한 피해구제 신속화
- ▶ 실효적 분쟁해결 수단 도입

추진 기반

민·관이 함께하는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구축

- ◆ 소비자 참여 및 거버넌스 강화
- ◆ 데이터 기반 소비자정책 강화

참고2

제7차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8대 핵심과제 및 22개 세부과제)

3	1. AI·디지털 시대 모두를 위한 소비환경 조성		
	1-1. 신뢰할수 있는 디지털 거래질서 확립		
	[핵심]	1-1-1. 디지털 시장에서의 불공정 근절	방미통위, 공정위(소비자원), 복지부, 식약처
		1-1-2. 안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환경 구축	문체부, 공정위, 성평등가족부
	1-2. 내 정보 내가 통제하는 ‘소비자 데이터 주권’ 보장		
	[핵심]	1-2-1. 소비자 데이터 주권 보장 및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개인정보위, 금융위
		1-2-2. 디지털 기반 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권리 보장	금융위
	1-3. AI·자율주행 등 신기술 분야 안전기준 선제적 정비		
		1-3-1. AI·신기술 제품 및 서비스 안전기준 정비	공정위(소비자원), 과기부, 식약처
		1-3-2. 모빌리티·교통 분야 소비자안전 강화	국토부
	1-4.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디지털 소비환경 조성		
	[핵심]	1-4-1. AI·디지털 이용역량 및 금융 소비자교육 강화	성평등가족부, 과기부, 교육부, 금융위
	[핵심]	1-4-2. 데이터 기반 소비자정보 제공 확대	공정위(소비자원), 재경부, 농식품부, 식약처, 산업부
	2. 일상생활 속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거래환경 구축		
	2-1. 공정하고 책임 있는 거래 질서 확립		
		2-1-1.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의 투명한 소비환경 조성	공정위, 국토부, 방미통위
	2-2. 소비자안전 우려 분야 대응 강화		
	[핵심]	2-2-1. 생활밀착형 제품·식품 안전관리 강화	기후부, 식약처, 농식품부
		2-2-2. 문화·교통·관광 등 생활안전 관리 강화	문체부, 국토부
	[핵심]	2-2-3. AI 기반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유통 차단	공정위, 공정위(소비자원), 식약처
		2-2-4. 어린이·고령자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산업부, 기후부, 복지부, 식약처
	2-3. 포용적 소비환경 및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 조성		
		2-3-1. 취약소비자 생활서비스 이용편의 및 접근성 강화	식약처, 문체부, 농식품부
	[핵심]	2-3-2. 친환경 소비 확산 및 그린워싱 대응 강화	농식품부, 기후부, 산업부, 국토부
대 추 진 전 략	3.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소비자권리 보장체계 확립		
	3-1. AI 기반 분쟁해결을 통한 피해 구제 신속화		
		3-1-1. 분야별 분쟁해결 전문성 제고	과기부, 개인정보위, 공정위(소비자원), 방미통위
		3-1-2. AI·디지털 기반 분쟁해결 절차 혁신	공정위(소비자원)
	3-2. 실효적 분쟁해결 수단 도입		
	[핵심]	3-2-1.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기반 구축	법무부, 공정위, 공정위(소비자원)
		3-2-2. 피해구제 접근성 및 편의성 강화	국토부, 공정위(소비자원)
	4. 민·관이 함께하는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구축		
	4-1. 소비자 참여 및 거버넌스 강화		
		4-1-1. 민간 참여 기반 소비자정책 활성화	공정위(소비자원), 중기부
		4-1-2. 소비자정책 협력 네트워크 강화	공정위, 공정위(소비자원)
추 진 기 반	4-2. 데이터 기반 소비자정책 강화		
		4-2-1. 증거기반 소비자정책 추진기반 강화	공정위(소비자원)

1 평가 개요

-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4~'26)」에 따른 '25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

* 평가위원회가 평가 절차를 총괄하고, 전문평가단(6개 분과)에서 분과별 과제 평가

* 5단계 등급(탁월, 우수, 양호, 개선 필요, 미흡)으로 평가

- (대상기관) 17개 중앙행정기관(12부1처4위원회) 및 17개 광역지방정부
- (대상과제) 총 157개 과제(중앙: 89개, 광역지방정부: 68개)

구분		소비자 안전	소비자 거래	소비자 역량	피해구제·정책협력	합계
합계		48개	42개	35개	32개	157개
중앙	예산과제	25개	17개	15개	12개	69개
	비예산과제	6개	8개	3개	3개	20개
광역	예산과제	13개	11개	16개	16개	56개
	비예산과제	4개	6개	1개	1개	12개

2 평가 결과

가.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89개 과제)에 대한 전체 평균은 81.3점(우수 수준)으로, 전년 대비 평균 점수*와 '양호' 과제비율**이 상승하고, '미흡' 과제 비율은 소폭 하락** 하면서 전반적으로 추진실적 향상

* (평균점수) '24년 80.8점 → '25년 81.3점(0.5점 ↑)

** (양호 등급 과제비율) '24년 27.6% → '25년 33.7%(6.1%p ↑)

*** (미흡 등급 과제비율) '24년 4.6% → '25년 2.2%(2.4%p ↓)

연도	평균 점수	합계	평가등급				
			탁월	우수	양호	개선필요	미흡
'24년	80.8점	87개	14개(16.1%)	40개(46.0%)	24개(27.6%)	5개(5.7%)	4개(4.6%)
'25년	81.3점	89개	14개(15.7%)	38개(42.7%)	30개(33.7%)	5개(5.7%)	2개(2.2%)

나. 광역지방정부

- 광역지방정부의 추진실적 결과는 ‘양호’ 이상 수준으로, 전년대비 평균 점수* 및 ‘우수’ 등급 이상의 과제 비율**은 상승하고, 개선 필요 이하 과제 비율은 동일 수준

* (평균점수) '24년 77.2점 → '25년 78.2점(1.0점 ↑)

** (과제비율) 우수 이상: '24년 45.5%→'25년 48.6%, 개선필요 이하: '24년 23.5%→'25년 23.5%

다. 우수 소비자정책사례

- 총 32개 과제가 ‘탁월’ 등급으로 선정 (☞ 참고 1 : 우수사례)
 - (기관별) 농식품부(2), 산업통상부(1), 기후부(1), 문체부(1), 식약처(1), 공정위(4), 인천(4), 대구(4), 경기(3), 경북(3), 전북(3), 경남(1), 공정위소비자원(4)
 - (영역별) 안전(9), 거래(9), 역량(7), 피해구제·정책협력(7)
- ‘탁월’ 등급을 획득한 과제들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 급변하는 디지털 소비환경에서 새로운 소비자권의 침해 이슈에 적극 대응
(공정위·소비자원·문체부·식약처·경기 등)
 - ▶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정보제공으로 소비자역량 제고
(농식품부·공정위·인천·전북·경기·경남·대구 등)
 - ▶ 불공정행위, 위해 제품 등에 대한 법 집행 강화 및 기업의 자율개선 유도
(기후부·산업통상부·공정위·소비자원·경기·대구·전북 등)
 - ▶ 민·관 협력 등을 통한 생활밀착형 소비자 이슈를 적극 발굴 및 대응
(공정위·소비자원·인천·대구·경북·경기·전북 등)

3 향후 조치계획

- 각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평가 결과 통보 : '26.9월초
- 추진실적 평가결과 환류 추진 : '26.10월~12월
-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제도 개선 : '26.12월

1 농축산물의 안전 및 원산지 관리 강화 (농식품부)

- ▶ 사전예방중심의 농산물 안전관리, 축산물 PLS(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제도 운영, 수입 농산물 유통 이력관리 대상품목 확대 지정 및 모니터링* 등 관리 강화로 국민 먹거리 안심 환경 조성에 기여

* 원산지 부정유통 감소 : ('24년) 3,178건 → ('25년) 3,137건

2 소비생활 밀접분야 제품안전 확보 (산업통상부)

- ▶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4,697개 조사)를 실시하여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명령 등 안전조치*를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

* 222개 리콜, 650개 제품 개선 권고조치 시행

3 생활화학제품 관리 선진화 (기후부)

- ▶ 소비자 참여형 시장감시단을 통해 불법제품을 감시·개선*하고, 생활화학제품 내 함유된 조성분 정보 공개('24년 2,040개 → '25년 2,267개) 및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등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추진

* 17,071개 제품 중 부적합 제품 2,711개에 대해 자율이행권고 등 조치 2,339개 자율이행 회신(86.3%)

4 해외직구 위해식품 적극 발굴 및 정보 공개로 안전 소비 지원 (식약처)

- ▶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24년 3,400건 → '25년 6,001건) 확대를 위해 식품 국내 반입의 신속한 차단(반입차단 원료·성분 지정: '24년 296종 → '25년 308종)하고, 위해식품 여부 확인을 위한 소비자 안전정보 접근성 제고 및 소통 강화(해외직구식품 올바른 접속자수: '24년 40만명 → '25년 89만명)

5 신기술·신유형 적용 제품 및 시설·서비스,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감시 강화 (소비자원)

- ▶ 국민이 실생활에서 안전 우려를 크게 느끼는 과제를 발굴(22개)하여 조사하고, 안전기준이 부재·미흡한 신기술·신유형 시설·서비스*의 안전기준 마련 등을 통해 안전사고 사전 예방 강화

* 무인시설·서비스, 복합체험시설 등 신유형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검증, SNS, 해외직구 등 신유형 유통 플랫폼 모니터링, 규제 미흡 분야 발굴 및 개선

6 다소비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대구)

- ▶ 소비자가 직접 감시활동에 참여하고, 다소비 식품, 계절별 테마별 식품의 주기적인 수거검사('24년 5,647건 → '25년 5,942건, 23건 행정조치)를 통해 위해식품을 사전 차단하여 식품사고 발생 예방*

* 전국 식중독 발생 548건(전년대비 27.3% 증가)에 비해, 대구지역 식중독 발생 '25년 9건(전년대비 10% 감소)

7 ~ 9 대상·목적별 건강·안전 정보제공 및 교육 활성화 (인천, 경북, 경기)

- ▶ 어린이·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 대상별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정보·교육 실시**로 소비생활 안전확보

* [경기] 어린이제품 100개 제품 대상 총 불소 함유량 및 과불화화합물 16종 검사결과 중앙부처에 공유, 팝업스토어 저가제품 안전기준 초과제품 적발 행정조치 강화

** [인천] 어린이 교육 100회 1,650명(만족도 98.5%), 노인안전 교육 700회 6,663명(만족도 88%), [경북] 오프라인 4만명, 온라인 42.5만명 정보제공

10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법제도 개선, 관련 행위 조사 및 제재 (공정위)

- ▶ 민간주도 자율준수협의회(28개사 참여)를 발족하여 자율규제 체계를 안착하고, 기술 기반 다크패턴 의심사례 감시·강화*

* [적발] '24년 47건 → '25년 82건(74.5%↑), [개선] '24년 32건 → '25년 47건(46.9%↑)

11 신기술 제품·서비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 모니터링 및 시정 (소비자원)

- ▶ AI 위성·악용 관련 부당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후기 조작 광고 등에 대한 적발 및 사업자 개선 조치를 실시(시정 건수: '24년 172건 → '25년 240건)하여 건전한 온라인 광고 환경 조성

12 게임콘텐츠 시장에서의 이용자 권익보호 (문체부)

- ▶ 게임이용자의 실효적인 피해구제 수단(소송특례 도입 등)을 마련하고,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위반사항 적발·시정(총 1,592건 적발, 1,474건 시정 완료 92.6%)으로 이용자의 신뢰도 향상 및 권익 제고

13 글로벌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감시 및 구제 (공정위)

- ▶ 해외 사기의심사이트 선제적 발굴·공표('24년 374건 → '25년 432건, 52개 사이트 차단) 및 국제 거래 불만해결 지원 과정에서 해외사업자와 소통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 불만해결 실효성 제고*
- * 키위닷컴 불만처리율 98.2%달성, 국제거래 상담건수 전년대비 27.7% 감소(384건→278건)

14 소비자 정보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상품 비교정보 제공으로 합리적 소비생활 지원 (소비자원)

- ▶ 친환경·다소비제품·최신기술 적용 제품 등에 대한 객관적인 품질비교 정보 제공 확대('24년 25% → '25년 33.3%)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구매 선택권 강화에 기여

15, 16 특수거래 분야 부당행위 감시 강화 (대구, 전북)

- ▶ 특수거래업체(후원방문판매업체, 다단계업체 등)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법령 준수 및 계도를 강화하여 소비자 불만 및 불편 감소*
- * [대구] 소비자 상담건수 감소 추세(전국 평균 감소 비율보다 5.6% 낮음),
[전북] 특수 판매소비자 상담 비율 감소: ('24년) 9.5%→ ('25년) 9.0%,

17 맞춤형 소비자정보 생산 및 확산 (인천)

- ▶ 소비자의 상담 다발 품목 및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맞춤형 정보 제공(취약계층 대상 13건)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합리적 소비 역량 강화

18 수요 기반 정보제공 채널 다각화(소비자인포그래픽스) (경북)

- ▶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채널을 다각화하고 맞춤형 콘텐츠(6건)를 제작·홍보함으로써, 고질적 소비자 정보 접근성 및 소비자 피해 감소*에 기여
- *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 ('24년) 144건 → ('25년) 81건

19 고령소비자 친화 식품의 확산 (농식품부)

-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 운영을 통해 우수식품 품질 유지 관리를 강화하고 지정제도 관심·준비 기업 대상 사용성 평가 비용 및 컨설팅 지원*, 소비자인지도 제고를 위한 우수식품 언론 홍보 등 기업지원 확대를 통해 고령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 및 건강한 식생활 지원
- * [사용성평가 지원] 총 22기업 41개 제품 비용지원,
[상시 상담 컨설팅] 55개 기업 192건 지원(전년 149건 대비 28.9%↑)

20~22 민간 주도 소비자교육 활성화 (공정위, 인천, 전북)

- ▶ 정부·지자체·민간단체와의 협업으로 민간 전문 강사 양성 지원 및 주제·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비자 교육 수요에 대응 강화 및 교육 효과성 제고*
- * [공정위] 소비자교육 총 841회 19,374명 실시, 교육 참여자의 성취도 및 만족도 78.0% 달성,
[인천] 소비자교육 총 500회 9,669명 실시, 교육 참여자 만족도 90.65% 달성,
[전북] 경제교육 총 1,662회 35,339명 실시, 경제교육 만족도 85.7% 달성

23, 24 고령층 대상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금융교육 활성화 (경기, 경남)

- ▶ 고령소비자 피해 다발분야, 정보격차 해소,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찾아가는 현장 교육 추진*으로 고령층의 소비·금융생활 역량 향상 지원
 - * [경기]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 5개 사업 177회, 전기통신 금융사기 지원 189회,
[경남] 고령층 대상 소규모 교육을 확대 (총 145회 중 77회)
-

25 인센티브 지급, 캠페인 등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대구)

- ▶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교육 확대('24년 12회 → '25년 17회) 실시를 통한 일상 속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실천 문화 확산

26 소비자 분쟁조정제도 품질 제고 (소비자원)

- ▶ 간이심의절차 시행, 신속조정트랙 및 신속조정부 운영을 통해 사건처리의 신속·효율성을 높이고(연간 사건처리 현황 '24년 6,969건 → '25년 8,682건), 이용자 대상 자체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분쟁조정 서비스의 품질 개선

* [이용자 종합만족도]: ('24년) 3.46점→('25년) 3.95점, [담당자 전문성]: ('24년) 3.63점→('25년) 3.93점

27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공정위)

- ▶ 소비자상담·피해구제 데이터 분석, 대국민 공모전(596건 접수) 및 소비자단체 의견수렴 등 다각적인 방식을 통해 소비자권익 제한 법령·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실효적인 법령·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소비자권익 증진에 기여

* [식약처] 디카페인 커피의 카페인 함량 기준 개선, [산업부] 전기차 충전장치 설치기준 개선, [농식품부] 동물병원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기준 마련, [기후부] 어린이 활동공간 바닥재의 환경안전관리기준 개선 등 27건 제도개선

28 유관 기관 협력 기반 소비자 상담, 피해구제 제도 개선 및 신속 대응 (인천)

- ▶ 관내 소비자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노인 대상 이동소비자 상담실 운영을 확대*하고, 피해 다발분야(전기통신금융사기 및 해외여행소비자 피해 등)의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활동 강화

* 이동상담실 운영 실적: ('24년) 11회→('25년) 138회, 이동상담실 이용 만족도 88.8% 달성

29 피해다발 분야에 대한 분쟁 유발 요인의 선제적 제거(결혼준비대행업 '스드메') (대구)

- ▶ 신규 제정된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홍보(7회) 및 사용을 권장*하여 결혼서비스 시장의 합리적인 거래 관행 정착에 기여

* 사업자간담회에 참석업체(9개 업체)의 대다수가 표준약관 반영 수용 66%(표준약관 기반영 2개, 표준약관으로 변경 예정 4개 업체)

30, 31 지역 소비자정책 추진 기반 및 지역 맞춤형 소비자보호 활동 강화 (전북, 경북)

- ▶ 지역 순회 찾아가는 소비자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노인복지관을 '고령소비자 이동지원 센터' 지정** (안동, 상주→ 경주, 경산 추가 선정) 하는 등 지역 여건과 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한 소비자보호 활동 강화

* [전북] 이동상담실 총 31회 9,748명 상담 실시

** [경북] 고령자 상담 지원건수: ('24년) 293회 → ('25년) 313회

32 전자상거래 분야 분쟁해결기능 개선 (경기)

- ▶ '경기민원24'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 자율조정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자율조정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온라인 채널 신고접수 2,158건 중 자율조정 처리 1,077건, 자율조정 분쟁해결 처리기간 평균 8.5일→7.2일로 단축

◇ 소정위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고시 등에 대해 개선 권고(소비자기본법 § 25②)

- ▶ 제1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08.10월)에서 논의되어 '09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 ▶ 공정위, 소비자원·소비자단체 건의, 대국민공모 등을 통하여 예비과제 발굴(~6월)
→ 소비자정책 전문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검토(~8월) 등을 거쳐 안건 상정

1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정보 표준화 및 제공 방식 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행)** 전기차 이용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충전요금 등 핵심 정보가 통합적·체계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제기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23.7.~'25.6.) 전기차 충전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총 101건으로, 이 중 요금·결제가 63.4%(64건)를 차지하고 있음

□ **(권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요금, 위치, 이용 가능 여부 등 핵심정보를 통합·표준화하고 공개되는 정보의 수준을 고도화

2 **유아용 수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산업통상부)**

□ **(현행)** 유아용 침구류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 함유량만 정하고 있을 뿐, 폭신한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나 안전기준은 부재

□ **(권고)** 영유아의 수면 또는 눕는 용도로 사용되는 유아용 수면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경도(폭신함) 안전기준과 시험방법을 마련

3 **핸디형 피부관리기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산업통상부)**

□ **(현행)** 핸디형 피부관리기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가정용 미용기기를 ①LED마스크, ②두피관리기, ③눈마사지기, ④플라즈마 미용기기 등 4종만을 관리대상으로 규정

- **(권고)** 안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정용 미용기기 안전기준」에 '핸디형 피부관리기'를 신설하여 안전기준·규격 등을 마련

4 **시·활용 표시·광고물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현행)**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에게만 투명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온라인상 AI 생성물을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확산 방지에 한계
- **(권고)** AI 생성물이 유통·확산되는 포털·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정보제공자와 이용자의 AI 생성물 표시 여부 등 관리 의무*를 부과
* 이용자에게 가상정보의 표시 방법 제공 및 표시의무에 대한 고지 의무 부과 등

5 **반려동물사료 영양성분 표시·광고에 대한 입증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 **(현행)** '반려동물완전사료*'에 대한 표시·광고에 대한 입증제도가 시행(28.9.3)될 예정이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입증자료 요청권자·제출기한 등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
*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다른 사료나 영양제를 추가로 섭취하지 않아도 일일 영양 요구량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조된 사료
- **(권고)** 반려동물사료의 표시·광고에 대한 입증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증자료 요청권자 및 제출기한에 대한 규정을 보완

- ◇ 향후에도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소비자 관점에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제안해 나갈 계획
 - 새로운 유형의 소비시장, 소비자 안전 분야 등에서의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여,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1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소정위”) 역할 강화 필요성

- 소정위는 그간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위한 정책 논의를 지속해 왔으나, 새로운 수요에 따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
 - 범정부 소비자정책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정위를 중심으로 한 현안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
 - 그간 소비자 현안 발생 시 개별 부처 중심의 임시 TF를 구성·대응해 왔으며, 주무부처 지정과 관계부처 탐색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 문제
 - 현안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 외의 다양한 주체가 논의에 참여할 필요성 확대

2 개선방안

가. 소정위 운영 상시화

-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현안 등이 있는 경우, 위원 요청으로 소정위를 탄력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
 - ※ 현재 소정위는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상황
- 전문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 본회의 전 실무·전문위원회를 활용*하여 대책 사전 검토
 - * (실무위원회)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기구로, 관계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
(전문위원회)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을 연구·검토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서면의결을 활성화하고, 이행결과를 차기 소정위에 보고하도록 하여 추진 상황을 관리

나. 소비자 현안 대응체계 강화

① 부당행위 지정고시* 제·개정 활성화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고시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부처가 관련 법령을 정비해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이 원칙이나, 소관 특정 또는 신속 정비가 곤란한 경우 고시를 통해 규제 공백 최소화

- 피해가 빈발함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역에 대하여, 소비자원 접수 피해사례, 분쟁해결기준 등을 활용해 부당행위 유형화

- 법령이 정비된 후에는 고시가 적용되지 않도록 일몰규정 등 활용

○ 소정위는 보유 자원을 활용하여 ▲고시 도입 권고, ▲소비자·사업자·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제·개정 타당성 확보 지원

* 소비자·경제계대표로 구성된 민간위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활용

- 효율적 고시 집행을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합동 단속반 구성 등 추진

② 지방정부의 실질적 역할 지원

○ 소비자 권익과 직결되는 다수 법령*을 지방정부에서 집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정보·자원을 공유함이 필수

* (예) 소비자기본법상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권한 등은 모두 지방정부에 위임

○ 지방정부의 소정위 참여를 독려하여 소비자정책 실효성 제고

- 지역 현안에 대한 범정부 대응 필요시 지방정부도 소정위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기 논의 참여를 통해 일선에서 집행 가능한 대책 수립

3 기대효과

□ 소정위 역할 확대 시 ①범정부 현안에 대한 신속 대응, ②규제 사각지대 최소화, ③컨트롤타워로서의 소정위 위상 강화 등 기대 가능

1 집단소송제 및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통한 집단적 피해구제 강화

- ☐ **(현황)** 소비자 분야에 포괄적 구제제도가 부재하여 소액·다수 피해발생 시 소비자는 개별 소송에 따른 비용 및 입증 부담으로 권리구제를 포기
- ☐ **(정책제안)** 소비자 분야 전반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소송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료제출명령 및 소송 전 증거조사 등 증거개시제도 보완

2 범정부 소비자안전 통합관리 체계 구축

- ☐ **(현황)** 안전·리콜 정보 및 관리 체계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과 신속 대응력이 저하
- ☐ **(정책제안)** 범정부 안전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위해평가 관리 기준을 일원화하며, 위해 제품 유통에 대한 플랫폼 책임성을 강화

3 구독경제·AI 등 신산업 분야 소비자보호체계 확립

- ☐ **(현황)** AI·디지털 거래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신유형 피해가 증가
 - 구독서비스의 자동 유료 전환, 해지 방해 등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으로 소비자 자기결정권 및 통제권이 침해
 - AI 알고리즘 불투명성으로 편향·오작동·차별 가격으로 인한 피해 시 원인 규명이 곤란하고,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중개자 책임 회피 문제 지속

- **(정책제안)** 구독서비스의 소비자 통제권 및 플랫폼 AI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유료 전환 전 명시적 사전 동의 의무화, '원클릭 해지 원칙' 도입 및 구독·자동결제 내역 통합 조회체계 구축 등 구독서비스 계약·해지全过程의 통제권 강화
 - 플랫폼 노출순위 등에 대한 공개 기준 마련 및 중개거래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과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AI의 소비자영향평가·설명청구권·이의제기 절차 도입

4 AI 시대 소비자 데이터 주권 강화

- **(현황)** 잦은 동의 요구로 동의 피로가 심화되고 호환성 부족으로 인한 데이터 이동권 제한, AI 프로파일링·자동화 결정에 대한 통제수단이 미비하며, 대규모 정보유출 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이 과도
- **(정책제안)** 목적별 세분화 동의·통합 조회 체계·손쉬운 동의철회 및 데이터 이동권 인프라를 구축하고, 프로파일링 등에 대한 데이터 통제권을 보장하며, 개인정보 유출 분쟁 시 사업자의 자료제출의무 강화

5 AI 전환에 대비한 포용적 소비환경 조성

- **(현황)** 무인·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의 필수서비스 접근성이 저하되고, 디지털 범죄 등 신유형 피해에 노출 증가
- **(정책제안)** 대면·유선 등 대체 이용수단 제공 및 장애·고령 친화적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디지털 신종 위협에 대한 취약계층 맞춤형 예방망 구축

붙임 3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및 위원 명단

- **(목적)**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소비자기본법 제23조)
 - * 소비자보호위원회('82년)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86년) → 소비자정책위원회('06년)
- **(기능)**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법 제25조①),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고시 등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법 제25조②)
 - 기본계획(3년 단위) 및 정책종합시행계획(매년)의 수립·평가와 그 결과공표
 -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구성)** 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 포함, 총 25인 이내
 - (당연직)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소비자원장 등
 - (위촉직) 민간공동위원장, 소비자대표, 경제계대표 등
- **(산하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7개)

소비자정책 위원회	• 위원장(2명) :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 위원(23명) : 정부위원(간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국소비자원장, 민간위원 • 기능 :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심의·의결
실무위원회	• 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위원 : 관계부처의 차관·차장·부위원장, 한국소비자원장 • 기능 : 소정위 상정 안건을 사전 검토·조정, 소정위 운영지원
전문위원회	• 위원장 :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 • 위원 : 관계부처 국장, 소비자정책국장, 소비자원 임원, 민간위원 • 기능 : 소정위 상정 안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의 연구·검토 • 구성 : 7개 분야 및 관계부처 * 공산품, 식의약품, 보건의료, 금융보험, 자동차·교통, 방송통신, 일반

□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① 당연직·정부위원 (10명)

연번	소속 · 직위	비고
1	국무총리	위원장
2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산업통상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8	국토교통부장관	
9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간사위원
10	한국소비자원장	

② 위촉직·민간위원 (15명)

연번	성명	소속 · 직위	비고
1	김성숙	계명대학교 교수	공동위원장
2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3	김재철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대표	
4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상임이사	
5	임종한	인하대병원 교수	
6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7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8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9	문은숙	소비자정책연구소 대표	
10	이영애	인천대학교 교수	
11	노홍인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12	주소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3	하성용	중부대학교 교수	
14	고흥석	군산대학교 교수	
15	나종연	서울대학교 교수	